

保存圖書館으로서의 奎章外閣 研究

A study on the Branch library of Kyujang-gak at Kanghwa Magistracy as a deposit library

裴賢淑(Pae Hyon-suk)*

< 목 차 >

緒言

1. 保存圖書館의 概念
2. 朝鮮朝 資料保存活動의 濫觴과 發展
 - 2.1. 保存活動의 濫觴
 - 2.2. 奎章外閣의 設置

3. 保存圖書館으로서의 奎章外閣

- 3.1. 文獻의 保存
- 3.2. 文獻의 保護
- 3.3. 文獻의 禁燬와 被奪

結言

초 록

광복 후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장서의 확충에만 급급하였다. 결과로 20세기 말에 들어와서는 서적을 보존할 공간이 협소하게 되었다. 장서 보존에 있어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자료를 수장할 공간이다. 따라서 도서관계의 증대한 관심사의 하나는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존도서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원의 보존도서관을 설립해야 하는데, 보존이란 '보존', '보호', '복원'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되고 있다. 열람이 주목적이 아닌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비롯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외사고와 규장각의 규장외각에 계승되었다. 본고는 조선 정조년간에 설치된 규장외각의 설치, 보존도서관으로서 문헌의 '보존', '보호', '복원' 활동에 관해 분석한 것이다.

주제어 : 보존도서관, 규장외각, 기록, 보존

Abstrac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in 1945, we were busy building up library collections, especially expanding the quantity of books. As a result, nowadays we witness the problem of limited space to keep the books. Spa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environment of library materials preservation. To solve this problem, we have to establish many levels of deposit library. The deposit library functions to preserve library materials. Preservation is defined as 'preservation',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Deposit library was not for circulation that established in the Korea Dynasty, was succeeded by the branch libraries for Historical Deposit Libraries and branch library of Kanghwa magistracy of Kyujang-gak(규장각) in the Chosun Dynast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stablishment, the activities and functions of the branch library of Kyujang-gak at Kanghwa Magistracy as a deposit library. Hence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for future research of the history of deposit libraries in Korea.

Key Words : deposit library, Kyujang oe-gak, archives, preservation

* 啓明文化大學 教授(hspae@krnc.ac.kr)

· 접수일 : 2004. 2. 20 · 최종심사일 : 2004. 3. 3 · 최종심사일 : 2004. 3. 11

緒 言

우리나라 도서관계는 광복 후 장서의 확충에만 급급하였다. 결과로 20세기 말에는 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서적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서적을 보관할 넓은 공간을 마련해야 할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규모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에만 주력했으므로 자료보존문제는 등한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도서관계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보존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이다. 이는 國立中央圖書館이 2000년 8월 資料保存館을 완공하고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를 옮겨 보관함으로써 촉진되었다. 이후 자료의 공동보존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보존관을 설립할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료보존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¹⁾ 이는 우리나라에 이미 고려시대부터 보존도서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나라 보존도서관의 기원은 고려 고종 14(1227)년에 海印寺에 설치한 外史庫까지 거슬러올라갈 수 있으니, 대략 8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고려의 보존도서관인 史庫는 조선시대에 계승되고 더욱 발전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朝鮮朝 保存圖書館의 濫觴과 發展으로 발표된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또 다른 보존도서관이 설립되고 운영되었으니 곧 奎章閣의 奎章外閣이다.

규장각의 문헌은 보존용 도서와 열람용 도서의 2종으로 구분해서 관리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규장외각은 열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보존만 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보존도서관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보존도서관의 목적은 오늘날의 보존도서관과는 설치 목적, 운영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규장외각의 보존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保存圖書館의 概念

우리나라에서의 보존도서관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비롯되어 조선에 계승발전되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존도서관의 보존이란 개념은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國際圖書館協會聯盟(IFLA)에서 공포한 『圖書館 資料保存 및 保護原則』에서는 ① 보존은 도서관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書庫, 施設, 人事, 政策, 技術, 方法 등의 管理와 財政問題

1) 강미희, 국내 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폐기실태와 공동보존에 관한 연구(碩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2003), p.9.

를 포함하고, ② 保護는 도서관 자료를 燬損, 損傷, 腐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特定政策 및 實務 외에도 전문가가 개발한 방법 및 기술까지를 의미하며, ③ 復原은 자료를 修理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문가의 技術과 判斷을 의미한다²⁾고 정의되어 있다. 즉 자료보존을 ‘保存’, ‘保護’, ‘復原’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보존은 자료의 파손을 지연시키고 방지하거나, 손상된 자료의 지적 내용을 보전하는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업무로 인식되고 있으며, 보호는 자료의 원형을 오래 유지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과정에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존보다는 소극적이고 미시적인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보호는 자료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기법과 절차를 의미하고 보존은 보호의 의미를 포함하면서 원자료의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 즉 보관과 설비의 정비, 더 나아가 직원의 전문성과 정책, 기술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정의하기도 한다.³⁾

기록의 보존은 필사시대부터 비롯되었다. 동양에서는 이미 漢代부터 복본을 구비하여 內禁의 장서와 外官의 장서라는 제도를 유지해왔다. 도서관이 설립되면서 자료를 수장하고, 이용을 위해 조직하고, 그 장서를 보존하였다. 그러므로 보존은 언제나 도서관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야 도서관계는 보존을 전문분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도서관 장서의 축적, 보호 그리고 보수작업을 정식으로 보존이란 중요업무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도서관자료의 보존이 전문성을 띄게 되자 여러 원칙이 개발되었는데, 도서관에서 문헌을 입수하면 영구적으로 보존한다⁴⁾는 원칙이 수립된 것이다.

서양에서의 자료보존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후반 영국 Blade의 『The Enemies of Books』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⁵⁾ 20세기에 들어와 보존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1966년 11월 플로렌스의 대홍수로 대부분의 자료가 훼손되자 이태리 국립도서관이 이를 수복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때이다.⁶⁾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손상된 자료의 복원과 자료의 보존 원칙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로서 각국 도서관은 자료의 훼손이 심해 시급히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할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하게 되었다. 1973년 미국 의회도서관도 1,700만권의 장서 가운데 34%인 600만권이 사용 불가능 혹은 보수 불가능한 상태로 손상되었다고 평가했다. 영국국립도서관도 자료상태에 대한 조사결과 1850년 이전 자료의 약 14%는 특수한 보존처리를 필요로 할 정도로 악화

2) 방준필, “자료보존과 매체변환,” 자료보존과정(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2), p.93에서 재인용.

3) 조옥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3), p.9.

4) Michéle Valerie Cloonan, “자료의 보존,” 方俊弼역, 도서관, 제49권, 제6호(1994. 가을), p.86.

5) 한상완, 도서관 자료보존 환경분석에 관한 연구(서울: 국립중앙도서관, 2001), p.6.

6) Paul N. Banks, “Preservation of Library Material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23(N.Y.: Marcel Dekker, 1978), p.181.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5권 제1호)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자료의 훼손, 변질, 유실은 자료보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자료보존에 대한 무관심은 인류의 문화적, 역사적, 지적 유산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플로렌스 대홍수 이후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훼손된 자료의 복원, 손상과 훼손의 예방계획 및 자료보존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다. 이로서 미국에서는 자료보존전문가와 사서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시행하고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 ‘大量脫酸處理法’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보호기술 및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그 한 예가 의회도서관이 자료보존을 위한 광디스크 기술의 응용에 지원하여 시디롬에 디지털 정보를 축적한 것이다. 또 미국정부가 지원하여 산화된 자료에 대한 마이크로필름을 제작하여 자료를 공동으로 보존하는 다양한 기반도 구축하였다.

미국의 국가보존정책은 1970년 의회도서관에 자료보존국을 설립하면서 수립되었다. 특히 의회도서관과 1974년에 출범한 연구도서관그룹(Research Libraries Group : RLG)은 공동보존정책을 활성화시키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이후 개별 도서관이 자료보존을 위한 협동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국가의 강력한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大學附設保存所(Institutional Storage), 單純協力保存所(Cooperative Storage), 共同協力保存所(Collaborative Storage), 地域共同保存所(Regional Library Center), 國家資料共同保存所(Repository Libraries) 등 여러 유형의 보존도서관이 설립되었다.

보존도서관의 기능은 세 가지로 생각될 수 있다. 첫째, 이용도가 낮은 자료라도 자료 자체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므로 언젠가 이용이 예상되는 자료를 보존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둘째, 나아가 잠정적으로 폐기된 자료를 공동보존하여 회원도서관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봉사영역을 넓히는 기능, 셋째, 이용도가 높은 자료와 낮은 자료를 분리하여 낮은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관리하여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기능,⁷⁾ 넷째는 국가 문헌을 별도로 관리하여 戰時 또는 非常時, 天災地變 등 災害에 대비하여 일시에 소멸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⁸⁾이 있다.

현대에는 도서관자료 중 이용빈도가 높은 자료와 낮은 자료가 함께 배열되어 있으면 서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문제해결을 하고 나아가 장서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존도서관을 설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거의 보존도서관은 오늘날의 보존도서관과는 설립 목적도 달랐고, 운영방법도 다르다고 하겠다. 그 주요목적은 중요문헌을 자손만대에 영구히 전송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唯一本이나 복본을 별도로 모아 화재나 전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체제는 아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의 규장외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보존도서관의 발달사를 고찰하고자 한다.

7) 洪英義, “保存圖書館에 대한 考察,” 國會圖書館報, 제20권, 제5호(1983. 7), pp.15-16.

8) 梁泰鎮, “保存圖書館 設置의 必要性,” 圖書館報, 제7호(서울특별시립종로도서관, 1978), p.42.

2. 朝鮮朝 資料保存活動의 濫觴과 發展

2.1. 保存活動의 濫觴

고려시대에도 문헌의 보존활동을 한 바 보존, 보호, 복원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우선 보존활동을 먼저 살펴보면 서적을 보존할 시설과 관리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자료보존활동을 엿볼 수 있는 것은 實錄과 이를 수장한 史庫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이다. 고려초기에는 사적들을 궁궐 내에 수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종 2(1011)년 거란병이 개경을 함락시키고 궁궐을 불태웠을 때 궁내의 사적이 소진되어 『七代事蹟』 편찬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⁹⁾ 당시 궁내에 수장되었던 사적의 부분이 다른 곳에 수장되어 있었다라면 이들 사적의 복본 제작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다.

『七代事蹟』 편찬 이후 역대의 실록이 편찬된 바 이들 실록은 궁내 史館에 수장되어 있었다. 인종 4(1126)년 李資謙이 왕권에 도전하여 난을 일으키고 궁을 불태웠을 때에 直史官이었던 金守雉가 수직하던 중 불이 번지는 것을 보고 國史를 등에 지고 山呼亭 북쪽으로 가서 땅을 파고 묻음으로써 전승될 수 있었다. 여기서의 국사는 실록을 포함한 사서를 말한다. 이에 의종년간 吏部에서 金守雉에게 吏部侍郎翰林侍讀學士知制誥를 追贈하였는데,¹⁰⁾ 이는 唐代에 安祿山의 난을 통해서도 국사를 보존시킨 韋述의 예를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인종년간까지 국사는 궁내 사관에 수장되어 있었다. 이 궁내사관은 곧 內史庫이다.

이후에도 즉각 실록의 부분을 제작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부분의 제작은 고종년간 『明宗實錄』을 편찬할 때 비롯된다. 고종 14(1227)년 9월에 『明宗實錄』 2부를 제작하여 1부는 史館에, 부분은 海印寺에 수장하였다.¹¹⁾ 이때 해인사에 外史庫를 설치한 것은 북쪽의 몽고족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침으로 말미암은 국사상실에 대한 불안감에서 부분을 작성한 것이다.

외사고는 해인사에 두었는데 고려가 숭불을 국시로 하였다고 하나, 지방관서에서도 수장할 수 있는 국사를 굳이 사찰에 수장한 이유는 당시의 사찰에는 대량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란의 소용돌이에 쉽게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곳은 사찰뿐이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 대량의 문헌과 불경을 수장했던 사찰은 44개소, 大藏殿을 건립했던 사찰만도 13개소가 확인되고 있다.¹²⁾ 이런 사정이 고려에 대규모의 寺刹文庫가 성립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여러 사찰 중에서 해인사에는 실록을 수장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고종 이후에는 실록이 제작되면 내사고와 해인사사고에 실록을 수장하였다. 그러나 이 실

9) 高麗史 影印本(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권95. 책3. p.126上 黃周亮

10) 高麗史 권98. 책3. p.190上

11) 高麗史 권22. 책1. p.453

12) 裴賢淑, “高麗朝의 寺刹文庫에 대하여,” 奎章閣, 6(1982.12), pp.45-61.

록은 왜구의 침입으로 원종 10(1269)년 彰善縣과 珍島로 소개되었고,¹³⁾ 哈丹의 침입으로 충렬왕 16(1290)년에 강화도로 옮겨 수장하였으며,¹⁴⁾ 충렬왕 18(1292)년에는 禪源寺를 거쳐 개경으로 환장하였다.¹⁵⁾ 공민왕 11(1362)년에는 홍건적의 침입으로 개성 궁궐의 사고는 파괴되고 실록은 露地에 산재되어 郭樞를 개성 사관에 보내 해인사로 옮기게 하였다.¹⁶⁾ 우왕 5(1379)년에는 왜구의 출몰로 해인사에 수장되어 있는 실록과 문헌을 善州 得益寺로 옮겨 수장시켰다.¹⁷⁾ 우왕 6(1380)년에는 다시 甫州 普門寺로 옮겼고, 우왕 7(1381)년에는 忠州 開天寺로 옮겨 수장하였다.¹⁸⁾ 우왕 9(1383)년에는 竹州 七長寺로 옮겼고,¹⁹⁾ 공양왕 2(1390)년에는 다시 충주로 옮겨 수장시켰다.²⁰⁾ 이와 같이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지대로 소개하는 등 실록을 보존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실록을 훼손, 손상,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활동도 하였다. 이는 곧 실록의 영구전승을 위해 포쇄와 점검을 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충렬왕 때 直史官 秋適이 해인사 수장의 실록을 포쇄한 것이다.²¹⁾ 또한 공민왕 11(1362)년 홍건적의 난으로 산일된 實錄史藁 3櫃 10餘筭을 留都監察司가 포쇄할 것을 상소한 기록이 있고,²²⁾ 우왕 9(1383)년 수찬 裴仲員이 竹州 七長寺의 실록을 포쇄한 기록도 있다.²³⁾ 이 3회의 기록만으로는 정기적인 포쇄와 점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후대의 기록이지만 해인사의 실록을 3년에 한번 포쇄했다는 기록²⁴⁾이 있으므로 3년마다 포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포쇄한 후 고려시대에도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보고서의 정확한 명칭은 알 수 없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고려시대에 작성된 『書籍置簿』’²⁵⁾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實錄曝曬形止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書籍置簿』는 조선초까지 전래되었고 그 작성관례도

13) 高麗史 권26. 책1. p.528.

新增東國輿地勝覽 影印本(서울: 東國文化社, 4291), 권30. p.515. 晉州牧

14) 高麗史 권30. 책1. p.624.

15) 高麗史 권30. 책1. p.627下.

16) 高麗史 권40. 책1. p.797과 권112. 책3. p.451. 白文寶.

17) 高麗史 권134. 책3. p.88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p.488. 善山都護府.

18) 高麗史 권134. 책3. p.900.

19) 高麗史 권135. 책3. p.90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8. p.148. 竹山縣

20) 高麗史 권45. 책1. p.887.

21) 徐居正 東文選 木版本[中宗年間], 권6. p.69.

22) 高麗史 권40. 책1. p.796.

23) 權近 陽村集 木版本[顯宗 13], 권16. 장2-3.

24) 增補文獻備考 影印本(서울: 東國文化社, 4292), 권221. 職官考. 장18表

25) 書籍置簿가 形止案을 의미하는 경우는 조선 현종 1(1660)년 禮訟이 있었을 때 춘추관에 수장되어 있는 『江華實錄置簿』를 본 즉, 예종과 명종의 실록이 완질이 아니어서 적상산사고에 파견하여 초록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의 서적치부는 곧 형지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서적부도 형지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顯宗實錄 影印本(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4291), 권2. 책3. p.240下左 1년 3월 丙子.>

조선에 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수호에 관한 기록은 산일되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史籍을 보존하고 보호한 고려조의 이러한 전통은 그대로 조선에 계승된다. 태종 4(1404)년 고사를 준수하여 충주사고에 수장되어 있던 『高麗實錄』을 포쇄하였고,²⁶⁾ 태종 16(1416)년 同副代言 李明德이 구례에 따라 사고수장 서책을 포쇄하였다.²⁷⁾ 세종 3(1421)년 왕이 『忠州史庫書籍簿』를 열람하고 필요한 책을 奉敎 鄭周生을 파견하여 가져오게 하였고,²⁸⁾ 세종 22(1440)년 4월에는 『高麗史』를 찬수하기 위해 충주 개천사에 수장된 고려조의 실록을 경중으로 수송하였다.²⁹⁾ 경중으로 수송해왔던 『高麗實錄』은 『高麗史』가 편찬된 후에는 관계기록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아마도 『高麗史』가 편찬된 후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상태로 춘추관 사고나 충주사고에 수장되어 있다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이 아닐까하고 추정한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실록을 편찬, 보관하고, 방습과 방충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재난에 대비하여 소개하였고, 포쇄와 점검을 하여 영구히 전승시키기 위한 보존과 보호활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에 계승되었다. 조선시대의 서적 보존활동도 실록의 보존활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실록을 보존할 체제는 春秋館에서 內史庫와 外史庫를 건립한 후 실록을 봉안하고 관장할 관원을 두는 것이었다. 실록의 보호활동은 사고에 수장된 실록을 관리하는 활동으로 曝曬하고 點檢하는 것이었다. 실록의 복원활동은 복본을 제작하는 형태의 복원활동과 손상된 실록을 수리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적 중요 사적인 실록의 보존활동은 조선후기에 규장각에 영향을 미쳐 규장외각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2.2. 奎章外閣의 設置

조선은 의사고 외에 또 하나의 보존도서관을 설치하였으니 곧 奎章閣의 奎章外閣이다. 규장외각은 강화도에 설치된 규장각의 서고이다. 강화도는 고려 고종 19(1231)년 몽고군이 침입하자 왕이 이곳으로 피난하고 여기에서 大藏經을 완성한 군사상의 요새였다. 조선시대에도 王京의 喉口라고 할 수 있어서 국방상 항상 중요시되었다. 인조 14(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때는 강화로 왕실 가족의 일부가 피난했던 일도 있었다. 이 천연의 요새인 강화도로 중요한 경적을 이안한 것은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28(1594)년 11월 전주사고본 실록을 강화부의 客舍로 이안³⁰⁾했던 때가 최초였다. 이후 사고를 강화도에 설치하였으니 강화가 육지와 격

26) 徐居正 東文選, 권93, 장1-2.

27) 太宗實錄 影印本(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4291), 권32, 책2, p.129上左, 16년 7월 庚戌.

28) 世宗實錄 影印本(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4291), 권11, 책2, p.420上右, 3년 1월 庚午.

2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 p.237, 忠州攷.

30) 宣祖實錄 影印本(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4290), 권69, 28년 11월 辛未, 책22, p.592上左.

한 섬으로 왕경에서 그다지 먼 곳이 아니면서도 외적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 인 조건 때문이었다.

또한 병자호란 후 강화의 위치는 더욱 중시되어 호란으로 무너진 성지를 수축하고 행궁을 영건하는 등 외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효종은 강화사고 즉 마니산사고 옆에 別庫를 건립하여 국왕의 敕命, 冊寶, 列聖朝의 御製, 御筆, 고금서적을 봉안하였다.³¹⁾ 영조년간에도 강화에 籍庫를 두고 영조 潛邸時의 御籍을 수장하였다.³²⁾ 그 후 소홀하게 되어 監守도 없이 허술한 형편이어서 영조년간에 누차 고치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정조 5(1781)년 규장외각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³³⁾ 그 자세한 전말은 다음과 같다.

정조는 5(1781)년 3월에 승정원에 명령하기를 강도에 수장된 열성조의 璫籍, 御製, 御筆, 金寶, 玉印, 竹冊, 敕命, 典章, 文字, 文簿가 浩汗하여 充棟이라고 들었는데, 이는 典章과 문헌이 많음이 史閣에 비유할 바가 아니며 가히 外奎章閣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문적을 규장각에서 관리하라고 명을 내렸다.³⁴⁾ 이리하여 당시 江華留守인 徐浩修가 행궁의 동쪽, 長寧殿의 서쪽에 있는 燕超軒을 철거하고 규장외각을 건립하였다.³⁵⁾ 규장외각이 건립된 위치는 강화부내의 북방으로 行宮의 동편, 眞殿인 장녕전의 서쪽이다. 그 구조는 正間 6간³⁶⁾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외에도 前楹 3간, 東壁門 2간, 挾門 2간, 正門 2간, 衛將直所 5간이 있었다.³⁷⁾ 이때 扁額은 제2제학인 俞彦鎬에게 명해 ‘外奎章閣’ 4자를 써서 걸었다.³⁸⁾ 정조 6(1782)년 4월 2일부터 문헌을 봉안하기 시작, 조선말까지 列聖朝의 御製, 御筆, 刊本, 儀軌 등을 봉안하였다.

『奎章閣志』³⁹⁾와 『六典條例』⁴⁰⁾에 內閣과 外閣의 직제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규장외각의 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규장외각은 직제상 각신을 두지 않고 문헌만 보관하는 단순한 서고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1) 奎章閣編 奎章閣志 丁酉字本[正祖 8(1784)], 권1. 建置 장3a.

32) 正祖實錄 影印本(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4291), 권12. 5년 12월 戊子. 책45. p.288下左.

33) 奎章閣編 奎章閣志, 권1. 建置 장3b.

34) 正祖實錄 권11. 5년 3월 癸未. 책45. p.217上.

奎章閣編 內閣日曆 寫本 正祖 5년 3월 10일 癸未

承政院日記 影印本(서울: 探究堂, 1971), 正祖 5년 3월 10일 癸未. 책81. p.149下右.

35) 正祖實錄 권13. 6년 2월 辛巳. 책45. p.298上右.

江華府誌 寫本(高宗 3(1866)), 권2. 宮殿 장16b. 奎章閣外閣.

金魯鎭, 江華府誌 寫本[光武 3(1899)], 장20b. 奎章閣外閣.

36) 奎章閣編 奎章閣志, 권1. 建置 장3a.

37) 江華府編 江華府宮殿考 寫本[高宗 18(1881)], 장2.

38) 承政院日記 正祖 5년 3월 11일 甲申. 책81. p.150下左.

39) 奎章閣編 奎章閣志, 권1. 職官 장11.

40) 六典條例 影印本(서울: 景文社, 1979), pp.764-765.

3. 保存圖書館으로서의 奎章外閣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문헌의 보존활동은 이미 고려시대에 비롯되어 조선의 외사고 제도로 정착되었다. 나아가 조선시대에는 외사고 이외에 또 하나의 보존도서관을 경영하고 있었으니 곧 규장외각이다. 규장각은 정조가 왕위에 즉위한 후 謨訓을 봉안하고, 고금의 문헌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한편,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여 문운을 진작시키고 나아가서 이상적인 왕도정치를 촉진시키고자 설치한 핵심 官司였다. 규장각은 내각과 외각으로 구성되었다. 내각은 文翰活動과 文獻의 管理를 담당하였고, 외각은 문헌의 印頒, 香祝, 印篆, 鑄字를 담당하였다. 규장외각은 내각의 여러 서고 가운데 하나로 강화도에 설치된 보존서고였다. 『奎章閣志』에는 奎章外閣과 江都外閣이란 두 명칭이 다 사용되고 있다. 이 규장외각에서 행한 보존도서관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보존, 보호, 금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3.1. 文獻의 保存

3.1.1. 文獻의 奉安

규장외각에 문헌을 봉안하기 시작한 것은 정조 6(1782)년이었다. 정조 6년 외각이 준공되자 좁은 장소에 서적이 많아서 불편한 奉謨堂의 문헌을 위시하여, 강화부의 行宮, 客舍, 冊庫, 史庫 옆의 別庫의 문헌과 西庫(西序), 內閣, 鼎足山史庫 등에 수장된 御製와 御筆로서 복본이 있는 것은 이봉하라고 명하였다.

이 앞서 정조 5(1781)년 6월 외각에 옮길 문헌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중과 강화에 수장되어 있는 문헌을 점검하게 하였다. 이때 강화의 內庫에 수장되었던 문헌은 경부 7종 45권, 사부 14종 303권, 자부 41종 679권, 집부 47종 516권, 도합 109종 1,543권이었는데 이를 摛文院에 보내기⁴¹⁾ 위해 우선 39종 637권을 8척의 배에 나누어 상송하여 西序에 보관하였다.⁴²⁾ 이어 12월에는 영조 잠저시에 수집해서 강화부 籍庫에 수장해놓은 御籍을 彰義宮 藏譜閣에 옮겨 봉안시켰다.⁴³⁾

정조 6(1782)년 2월 14일에는 규장각에 명하여 어제어필로서 사고에 분산되어 보존되고 있는 문헌을 모두 규장외각에 이봉할 것을 명했다. 당시 直閣인 金載瓚이 이미 사관을 겸하고 있어서 冊寶를 규장외각에 봉안하러 갈 때 사각수장의 어제어필을 이봉하도록 하는 등 이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⁴⁴⁾ 동 3월 20일 沈念祖의 건의에 따라 봉모당의 望後 봉심일에 강

41) 奎章閣編 內閣日曆. 正祖 5년 3월 28일 辛丑.

42) 奎章閣編 內閣日曆. 正祖 5년 6월 29일 庚子.

奎章閣編 西庫藏書錄 寫本[高宗年間], 장67-68. 江都移來件.

43) 正祖實錄 권12. 5년 12월 戊子. 책45. p.288下左.

도로 옮길 譜略, 誌狀, 御製로서 奉謨堂에 수장되어 있는 문헌도 점검하였다.⁴⁵⁾ 이어 봉모당 수장본 중에서 규장외각에 봉안할 어제는 우선 摛文院에 임시로 며칠 두었다가 이봉하였다. 이후 3월 23일에는 규장외각에 봉안할 때의 應行節目을 璿源錄과 實錄을 봉안할 때의 事目을 참작하여 마련한 후 이대로 시행하게 하였다.⁴⁶⁾

이때 규정한 奎章外閣書籍奉安事目은 22조에 달하는데 璿源譜略, 列聖誌狀 및 御製와 內出冊寶를 이봉할 때 提學이나 直提學 중 1인과 直閣과 待敎 중에서 1인이 陪往할 것, 執事官은 司卷이나 頌籤 중에서 1인, 檢書官 4인 중에서 1인이 宗簿寺 郎廳의 예에 의해 陪往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⁴⁷⁾ 이 22조의 시행세칙 외에도 사각에 봉안되었던 어제와 어필을 규장외각에 이봉하는 여러 의절을 지시하였다.⁴⁸⁾

<표 1> 以來本의 原奉安處

原奉安處	種數	冊數
奉謨堂	183	217
客舍	96	99
別庫	142	188
史庫	62	122
冊庫	262	4,187
西庫	4	13
行宮	4	4
未詳	9	62
計	762	4,892

<표 2> 年度別 奉安狀況

年度	種數	冊數
正祖 6	762	4,892
正祖 8	128	573
正祖 9	21	29
正祖 13	14	17
正祖 15	90	262
正祖 19	27	51
正祖 22	18	60
純祖 14	33	244
純祖 28	34	92
憲宗 2	4	4
憲宗 5	30	49
憲宗 9	4	4
哲宗 7	44	120
未詳	3	3
計	1,042	6,130

이리하여 4월 1일 直提學 沈念祖, 檢校直閣 徐鼎修와 金載瓚, 司卷 全大重, 檢書官 柳得恭 등이 강화에 파견되었다.⁴⁹⁾ 이에 초2일에 경중에서 가지고 간 책보, 보략, 지장, 어제 및 행

44) 奎章閣編 內閣日曆. 正祖 6년 2월 14일 辛巳.

45) 奎章閣編 內閣日曆. 正祖 6년 3월 19일 丙辰.

46) 奎章閣編 內閣日曆. 正祖 6년 3월 23일 庚申.

裴賢淑, “江都外奎章閣考,” 圖書館學論集, 제6집(1979), pp.5-7.

47) 奎章閣編 奎章閣志. 권1. 建置. 장3b.

48) 奎章閣編 內閣日曆. 正祖 6년 3월 23일 庚申.

49) 奎章閣編 內閣日曆. 正祖 6년 4월 1일 丁卯.

奎章閣編 乾隆四十七年壬寅四月初二日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誌狀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 寫本[正祖 6(1782)], 卷末.

궁 수장의 책보를 봉안했고, 초3일에는 別兼春秋를 겸한 金載瓚이 사고에 가서 봉래해온 어제와 어필을 봉안했으며, 초4일에는 의계 및 冊庫의 문헌을 봉안하였다.⁵⁰⁾ 이리하여 규장외각으로 옮길 문헌은 모두 이봉되어 명실상부한 규장각의 서고로 성립되었다. 이때 봉안된 문헌은 정조 6년도 규장외각의 형지안에 의하면 전부 762종 4,892책이었다.⁵¹⁾ 이들 문헌을 이봉하기 이전의 봉안처는 <표 1>과 같다.

이후에도 御籍이 완성되면 수시로 봉안하였는데 외규장각의 형지안을 분석한 바 그 연도별 봉안상황은 <표 2>와 같이 나타나 정조 6년에 봉안된 문헌을 제외하고도 역시 정조년간에 봉안된 문헌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역대로 봉안된 문헌은 도합 1,212종⁵²⁾ 6,400책이었다. 한편 외각에 봉안된 문헌을 필요할 때 경중으로 취래한 것이 있으니 <표 3>과 같다. 이들 문헌은 무려 170종 270책이었다. 그 외에 대다수의 문헌은 병인양요까지 외각에 수장되었다가 화를 입었으니 그 수가 1,042종 6,130책이다.

<표 3> 取來 또는 內入本

年 度	種 數	冊 數
正祖 10년 5월 內入	2	2
正祖 15년 本閣 燒却	27	48
純祖即位年 7월 奉來	4	7
純祖 2년 2월 內需司 燒却	96	99
純祖 5년 3월 奉上去	5	5
憲宗即位年 12월 奉上去	6	6
憲宗 9년 8월 內入	9	52
憲宗 14년 7월 內入	1	30
憲宗 15년 7월 奉上去	2	2
哲宗 8년 9월 奉上去	18	19
計	170	270

규장외각에 수장되었던 전적의 자료적 성격은 향본, 당본, 왕실자료, 기록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鄉本은 지금의 한국본과 같은 뜻으로 저자가 조선인이든 중국인이든 상관없이 조선에서 간행된 문헌이다. 거의 대부분이 冊庫에 수장되었던 문헌인데 이를 이봉한 것이다. 唐本은 지금의 중국본과 같은 개념으로 明나라의 欽賜本이었거나, 연행사신들에게 명해 구입해온 문헌들이다. 이 중에는 西學關係의 문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皆有窩書目』이나 『閔古觀目錄』과 비교해보면 복본이 없다. 복본이 없는 문헌을 복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열람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존용으로 둔 이유를 알 수 없다.

50) 奎章閣編, 內閣日曆. 正祖 6년 4월 11일 丁丑.

金載瓚, 海石日錄. 寫本純祖 27(1827)], 권1. 장30a.

51) 裴賢淑, “江都外奎章閣考,” 圖書館學論集, 제6집(1979), pp.68~101.

52) 봉안된 종수는 합부된 책(36종)을 모두 개별화시켜서 낸 수치임.

당분 가운데 西學書籍은 임진왜란 이후의 燕行使臣을 통해 입수한 것이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이 서학서를 규장각에도 소장하였으나 이후 남인과 중인 사이에 점점 전파되어 천주교를 신봉하니 조정에서 천주교는 충효사상에 반하고 군신의 도를 어지럽게 하여 사회의 윤리를 문란하게 한다고 박해를 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정조 15(1791)년 최초의 천주교 박해사건인 辛亥邪獄이 발생되어 본각에서 소각한 것이다.

왕실자료로 御製類는 역대 왕의 詩, 賦, 文을 모은 別集이나 總集이며, 그 외 宸章으로 願命, 遺詔, 綸音, 警世訓箴, 碑銘, 廣韻 등으로 그 내용이 실로 다양하다. 어필을 수록한 형태는 拓印, 眞墨, 殿額 등이 있었다. 王室傳記資料로서 敎命, 玉印, 懿旨, 竹冊, 金寶, 玉寶, 玉冊, 誌狀, 碑文, 致祭文, 『璿源系譜記略』 등이다.

기록류는 『奴婢推刷案』과 儀軌類이다. 『奴婢推刷案』은 규장각의 다른 서고에는 기록이 없는 자료이다. 아마도 『奴婢推刷案』은 掌隸院 등에 보관되었을 것인 바 그 복본일 수 있다. 조선시대에 노비의 다과는 재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노비는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 되었고, 從母法에 의해 상속되었다. 노비는 세습하여 상전에게 신역을 바쳐야 했으므로 도망자가 생겼고, 이 도망자를 막기 위하여 推刷都監을 두었다. 정조년간에 이르러서는 노비추쇄법을 폐지하였고, 순조 1(1801)년에는 內需司와 각 官房의 奴婢原簿를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규장외각에 소장되어 있던 『奴婢推刷案』도 순조 2년 내수사에서 수거해서 소각한 것이다. 이후 고종 28(1886)년 노비의 세습을 금하는 부분적인 개혁을 하였고, 고종 31(1894)년 공사노비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인신매매를 엄금해 형식상 노비제도는 사라졌다.

의궤류는 국가적인 큰 일이 있을 때 임시관청인 都監을 두어 일을 거행한 의절을 기록한 것이다. 후세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이 끝날 즈음에 다시 儀軌廳을 설치하여 일의 자초지종, 즉 傳敎, 啓辭, 文牒, 物需, 人員, 座目 등 經過와 經費를 기록한 의전이다. 소장되었던 의궤는 書籍監印, 山陵, 嘉禮, 上諡, 尊號, 營建, 冊禮, 胎室, 進宴, 魂殿, 祔廟, 誌石, 錄勳, 國葬 때의 儀軌이다.

3.1.2 奎章外閣의 奉審

효종년간에 건립된 別庫, 영조 잠저시에 수집했던 御籍을 옮겨 수장한 籍庫에는 實錄과 같은 국가적인 官撰의 史書나 국정에 관한 공문서는 없었지만 보존도서관의 기능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이 별고, 책고나 적고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그 보관과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서고들은 모두 일종의 보존도서관의 기능을 했으며, 정조년간에 규장외각으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정조 6년 규장외각에 처음 문헌을 봉안한 이후 수시로 문헌을 봉안하였고, 수장된 문헌과

외각 건물을 奉審하고 관리해왔다. 정조 6년 문헌을 봉안하면서 외각 건물을 관리할 규정을 마련하였다. 곧 이어 외각에 대한 봉안, 수호, 봉심의 기한, 원역의 정원에 대하여 沈念祖의 건의안을 논의하다가 5월 10일에 奎章外閣守護節目을 완성하였다. 그 가운데 외각 건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江華府의 長寧殿은 春秋에만 봉심하는데, 규장외각을 內閣의 奉謨堂과 같이 이상이 있건 없건 1달에 2차례 봉심한다면 서로 방해될 수 있으므로 장녕전의 예에 따라 봄과 가을에 각각 한차례 시행하고 開門奉審節次 및 봉심 후 이상 유무에 대해 장녕전의 예에 따라 보고할 것을 정하였다. 봉심해서 각외에 雨漏處나 지붕이 벗겨진 頃이 있으면 내각에 보고한 후에 곧 수보할 것을 규정하였다. 만약 장마나 폭풍우가 있어서 혹 건물 내에 비가 스며들 우려가 있으면, 춘추에 시행하는 기한에 구애되지 말고, 또한 내각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도, 守臣인 江華留守가 완급을 참작하여 수보할 것을 정하였다.⁵³⁾ 이때에 수신이 任所에 없더라도 經歷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봉심한 衛將이 내각에 보고하여 내각으로부터 啓辭가 있으면 매월말 守臣은 봉심한 후 기사에 따라 시행할 것도 규정하였다. 사고는 사관만이 개폐하게 한 것과는 달리 규장외각을 개폐하는 권한을 수신에게 준 것은 불시에 봉심할 때 편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을 열 때마다 수직장교인 위장이 개폐하여 체면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봉심, 봉안, 청소를 할 때 이상 유무의 조사와 出入番의 省記는 서리가 기록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강화부 서리 중 最選窠는 吏禮 2房이므로 그 중 문필을 지낸 자 중 2인을 파견하여 겸해서 거행하게 하였다.⁵⁴⁾

이 절목에는 규장외각에 이상이 있어 급한 경우에는 유수가 개문하여 봉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규장외각의 관리는 사고보다는 엄중하지 않은 것 같다. 사고는 우무처가 있어도 지방관들이 개문하여 봉심할 수 없었고 반드시 파견된 사관만이 개고하여 봉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장외각은 위급한 상황에서는 강화유수가 봉심하여 시행하는데 이때 체면을 존중하여 위장이 개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내 청소의 지휘는 강화부 서리 중에서 2인을 파견하였다. 그렇지만 강화는 왕경의 喉口란 인식이 있었으므로 그 유수는 요직이었다.

3.1.3. 奎章外閣의 守護

규장외각을 관리함에 있어 건물의 관리 외에 외적의 침입, 무뢰배의 침입과 화재 등 의외의 변이 없을 수 없다.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경호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奎章外閣守護節目에 외각 건물의 관리에 대한 조항에 이어 외각의 수호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는 바 그

53) 奎章閣編, 內閣日曆, 正祖 6년 4월 11일 丁丑.

54) 奎章閣編, 內閣日曆, 正祖 6년 5월 10일 丙午.

주요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을 중히 여기고 수호를 근엄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관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는 법이어서, 江華府와 行宮에는 이미 守直軍官이 있고 지역적으로 가깝고 같은 일이므로 이들로 규장의각의 衛將을 겸하게 하여 수직할 것을 규정하였다. 修理와 掃除, 庭除, 巡警, 門牆 등을 담당할 군사는 강화부의 官隸 중에서 착실한 사람 2명을 따로 뽑아 차출하여 거행할 것을 정하였다. 또한 위장수직은 행궁의 옛 규정에 의하여 서리 1명과 군사 1명이 하루를 걸러 번갈아 쏘을 정해 순서대로 수직하며 강화부에 省記를 제출하게 하였고, 강화부에서는 무시로 감찰하여서 혹시 수직을 하지 않거나 이탈하는 자가 나타나면 중벌을 내릴 것을 규정하였다.

수직자들의 보수도 언급하여 행궁 수직군관은 本料가 없으나 外閣衛將을 겸해서 차출한 후는 元料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였다. 서리는 비록 본료가 있으나 이미 겸해서 관리하므로 加料해야 하므로 守臣이 的定한 정식을 참작하여 가급하게 하였다. 군사는 겸해서 차출하기 어려운데 특별히 가출하였으므로 元料도 역시 마땅히 참작하여 마련할 것을 정하였다.

위장, 서리와 군사의 差出과 除汰는 강화부에서 주관하게 하였다. 차출할 때는 내각에 명단을 기록하여 보고한 후 帖文을 받아가게 하고, 除汰할 때 역시 내각에 보고하여 그 하급관청의 체계를 지킬 것을 정하였다. 이 규정에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할 것도 정하였다.⁵⁵⁾

이로서 규장의각의 수호에는 강화부의 군관, 관예가 동원되었고, 또한 이들의 근무상황, 수당, 임면 등에 대해 규정해서 수호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수비에는 沁府와 行宮의 守直軍官이 겸해서 차출되었으며, 庭除, 修掃, 巡警, 門牆 등은 沁府官隸 중에서 2명을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 수직군관, 서리의 임면, 수당과 봉급을 강화부에서 부담했음⁵⁶⁾을 보아 외각은 江華留守의 책임 하에 수비와 관리가 행해졌음이 분명하다.

3.2. 文獻의 保護

규장의각에 봉안된 문헌의 보호를 위해 봉심, 포쇄, 점검 등의 관리와 보호활동도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을 수 없다. 이에 정조 6년 4월에 규장의각에 문헌을 처음 봉안하면서 봉안과 수호에 대한 절목을 마련하였으나, 여기에는 문헌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형지안의 작성에 대하여는 앞서 2월 14일에 정해진 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사고에는 형지안이 있는데 규장의각에도 없어서는 안되므로 포쇄할 때마다 기록하여 1건은 外閣, 1건은 內閣, 1건은 西庫에 上呈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였다.⁵⁷⁾ 그러나 아직 외각의

55) 奎章閣編, 內閣日曆. 正祖 6년 5월 10일 丙午.

56) 奎章閣編, 內閣日曆. 正祖 6년 5월 10일 丙午.

57) 奎章閣編, 內閣日曆. 正祖 6년 2월 14일 辛巳.

奎章閣編, 奎章閣志. 寫本(初草)[年紀未詳], 권1. 書籍 曠書.

포쇄간격에 관한 정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규장외각은 형지안 3건을 작성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였는데, 사고의 2건 작성과는 다른 점이다.

규장외각에 수장된 문헌의 포쇄간격은 정조 7(1783)년에 제정되었다. 내각의 포쇄는 매년 5월 단오 후에서 7월 초순 전 또는 7월 초복 전에 택일 거행하도록 규정⁵⁸⁾하고 있으나 후기에는 7월 望念間⁵⁹⁾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본각은 매년 1차 거행하는 것이 정식이었다. 이와는 달리 규장외각은 直閣이나 待敎 중에서 1원이 1년의 간격을 두고 포쇄하는 것을 정식으로 규정하였다.⁶⁰⁾ 그러나 이 정식은 정조 11(1787)년 이후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지 혹 기록이 인멸되었는지 고종 이후에는 점검한 기록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외각을 점검한 자세한 상황은 <표 4>와 같다.

요컨대 외각은 1년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포쇄와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규정대로라면 정조 6년 봉안 이후 128년간 64회 점검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전래되는 기록은 36회 점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봉안 14회, 고출 1회, 봉심 14회, 봉래 5회를 곁해 포쇄하였으며, 단순히 포쇄만 한 것은 2회이다. 봉안과 봉심을 하면서 점검한 경우가 가장 많고 고출은 딱 1회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역시 보존도서관의 기능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다.

봉안, 봉심, 고출과 취래의 경우는 다른 목적이 우선이었으므로 제외하고 봉심과 포쇄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모두 17회이다. 이를 『內閣日曆』의 날짜에 따라 구분하면 2월 1회, 3월 5회, 4월 1회, 6월 1회, 8월 1회, 9월 6회, 춘 1회, 추 1회이다. 이를 계절별로 나누면 봄 7회, 여름 2회, 가을 8회로 봄과 가을에 주로 행한 것을 볼 수 있다. 봉안, 고출, 봉래, 지거의 경우도 1월 2회, 2월 4회, 3월 1회, 4월 1회, 5월 1회, 7월 2회, 8월 4회, 9월 2회, 11월 2회, 12월 1회, 도합 19회이다. 이를 계절별로 나누면 봄 7회, 여름 2회, 가을 7회, 겨울 3회이다. 이 특수 목적을 위한 개고도 역시 봄과 가을에 주로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된 관리의 경우는 봉안의 경우는 검교제학 1회, 직제학 1회, 검교직제학 1회, 직각 1회, 검교직각 3회, 춘추관당상 1회, 대교 2회, 원임대교 1회, 검교대교 2회, 검서관 1회 파견되었고 미상은 2회이다. 고출시에는 검교직제학 1회, 검교대교 1회 파견되었고, 봉래와 지거에는 직제학 1회, 검교직제학 1회, 원임직각 1회, 中使 1회, 미상 1회이다. 봉안, 고출, 봉래는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하였으므로 내각의 관원이 파견되었다. 단순히 봉심, 포쇄하고 점검한 경우는 직제학 1회, 직각 1회, 원임대교 1회, 별검춘추 1회, 강화유수 9회, 미상 4회 파

隆文樓書目. 寫本[高宗年間], 장9b.

고종년간에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隆文樓書目에도 外奎章閣形止案 5권이 수록되어 있다.

58) 奎章閣編, 奎章閣志. 권1. 曝書. 장29a.

奎章閣編, 奎章閣志. 寫本(再草)[年紀未詳], 권1. 書籍. 曝書.

59) 宗親府編, 宗府條例[高宗年間], 曝書. 장26a.

60) 奎章閣編, 內閣日曆. 正祖 7년 9월 27일 乙卯.

奎章閣編, 奎章閣志. 寫本(初草), 권1. 建置. 內閣. 奎章外閣.

<표 4> 外奎章閣의 點檢狀況

年 月 日	目 的	奉命官職名	奉命官姓名	典 據
正祖 6. 4. 2.	奉 安	直 提 學 檢校直閣 檢校直閣	沈念祖 徐鼎修 金載瓚	形止案 海石日錄 권1
正祖 7. 3.	奉 審			內閣日曆 7. 9. 14.
正祖 7. 9. 13.	奉 審	江華留守	金魯鎮	內閣日曆 7. 9. 14.
正祖 8. 3. 5.	奉 審	直提學兼留守	鄭志儉	內閣日曆 8. 3. 6.
正祖 8. 7. 21.	考 出	檢校直提學 檢校待教	徐有防 李崑秀	形止案 內閣日曆 8. 7. 16.-17, 22.
正祖 8. 9. 25.	奉 審	江華留守	嚴 璿	內閣日曆 8. 9. 26.
正祖 9. 3. 5.	奉 審	江華留守	嚴 璿	內閣日曆 9. 3. 6.
正祖 9. 9. 25.	奉 審	江華留守	嚴 璿	內閣日曆 9. 9. 26.
正祖 10. 1.	奉 安	檢校直提學 檢校待教	徐浩修 李崑秀	內閣日曆 9. 9. 29.~10. 1.~5.
正祖 10. 5. 15.	奉 來	直 提 學	朴祐源	內閣日曆 10. 5. 14.
正祖 12. 3. 28.	奉 審	江華留守	宋載經	內閣日曆 12. 3. 30.
正祖 15. 2.	奉 安	直 閣	徐榮輔	形止案 內閣日曆 15. 2. 1.
正祖 15. 4. 18.	奉 審	江華留守	洪秀輔	形止案 內閣日曆 15. 4. 27.
正祖 19. 8.	曝 曬	直 閣	李始源	形止案
正祖 20. 9. 13.	奉 審	江華留守	金履翼	內閣日曆 20. 9. 15.
正祖 22. 11.	奉 安	春秋館堂上		內閣日曆 22. 11. 14.
正祖 23. 6.	奉 審	別彙春秋	洪樂游	內閣日曆 23. 6. 21.
正祖 23. 秋	奉 審			內閣日曆 24. 3. 30.
正祖 24. 3. 28.	奉 審	江華留守	洪明浩	內閣日曆 24. 3. 30.
純祖即位 7. 24.	奉 來	原任直閣	金勉柱	內閣日曆 即位 7. 26.
純祖 2. 2.	持 去	中 使		形止案 純祖 14年度
純祖 3. 春	[奉 審]			內閣日曆 3. 9. 7.
純祖 3. 9. 5.	奉 審	江華留守	韓用鐸	內閣日曆 3. 9. 7.
純祖 5. 3. 24.	奉 來	檢校直提學	朴宗慶	內閣日曆 5. 3. 24.-26.
純祖 14. 8. 28.	奉 安	檢校直閣	李光文	形止案 內閣日曆 14. 8. 26
純祖 15. 春	[奉 審]			內閣日曆 15. 2. 21.
純祖 16. 2. 15.	奉 來		鄭元容	內閣日曆 16. 2. 16.
純祖 28. 8. 29.	奉 安	待 教	徐有榮	內閣日曆 28. 7. 2.; 8. 24.; 8. 29.
憲宗即位 12. 28.	奉 安	檢 書 官	金鳳叙	內閣日曆 即位 12. 26.
憲宗 2. 8. 27.	奉 安	原任待教	金正喜	形止案 內閣日曆 2. 8. 9.
憲宗 5. 9. 6.	奉 安	待 教	南秉哲	形止案 內閣日曆 5. 8. 17. ; 9. 4.
憲宗 9. 8.	奉 安	檢校待教	李裕元	形止案
哲宗 3. 2.	[奉 安]			內閣日曆 3. 2. 12.
哲宗 4. 1.	[奉 安]			內閣日曆 4. 1. 6.
哲宗 7. 11. 11.	奉 安	檢校提學	金炳翼	形止案(2次) 內閣日曆 7. 11. 6.-13.
哲宗 8. 9.	曝 曬	原任待教	洪淳穆	形止案(2次)

견되었다. 이때 본각에서 파견된 관리는 4회인데 비해 강화유수가 포쇄한 경우는 9회이다. 압도적으로 강화유수가 포쇄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외춘추는 사각을 열 수 없는 것과는 판이한 양상이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강화유수는 규장각의 閣職을 겸직하였다. 외각에 서적을 봉안하고 포쇄하기 위하여 각문을 개폐하는데 사고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일관에게 길일을 추택하게 하여 시행하였으나,⁶¹⁾ 강도까지 일관을 대동하지는 않은 것 같다.

현재 전래되고 있는 규장각의 형지안은 22책이다. 표지에 ‘內閣上’으로 기록된 것이 5책, ‘西庫上’ 6책, ‘本閣上’⁶²⁾ 2책, ‘閣上’⁶³⁾ 1책, 개장하여 알 수 없는 책 3책, 기록되지 않은 책 5책이다. 기록에 나타나는 개고기록이 36회이므로 각각 3책을 제작했다면 108책이 전래되어야 하고 프랑스군에 의해 소실된 규장외각 수장본은 제외하더라도 72책이상 전래되어야 한다. 프랑스에 수장된 2책을 제외하고는 다 내각에 수장되었던 형지안인 것으로 보아 외각에 수장되었던 형지안은 병인양요(1866) 때 산실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 규장외각의 형지안은 철종 7(1856)년과 철종 8(1857)년도분이다. 아마도 규장외각 수장본임을 나타내는 말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나 개장으로 인멸되었다.

형지안을 통해서 규장외각의 서고 내 풍경과 보관된 서적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남쪽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정면 중앙의 書卓을 중심으로 正間 3層櫺, 正間右卓, 正間左卓, 北右卓, 北左卓, 西一卓, 西二卓, 西小卓, 東一卓, 東二卓, 東小卓, 중앙에 別一架, 別二架, 別三架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정간에는 왕실봉안물, 冊寶와 어필, 병풍, 족자류를 보관하였고, 북쪽과 서쪽 서가에는 의궤를 보관하였다. 동서의 소탁과 동쪽의 탁자에는 다른 서적을 보관하였다.⁶⁴⁾ 역대의 형지안을 비교하면 이들 서적의 이동상황을 알 수 있다.

사고에서는 포쇄와 점검이 끝나 다시 궤에 서적을 넣을 때는 책과 책 사이에 초주지를 2장씩 넣고, 防蟲과 防濕用的 川芎과 菖蒲末도 넣은 후 붉은 보자기나 세모시 보자기로 싸고 그 위에 기름종이인 油菴을 덮고 궤에 넣어 사각에 봉안하였다. 아마 규장외각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와 같은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61) 奎章閣編, 內閣日曆. 正祖 6년 3월 18일 乙卯.

62) 여기서의 본각이라 하면 奎章外閣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내각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乾隆六十(1795)年度形止案에 의하면 『修身西學』 등 西學關係書籍에 “因本閣開辛亥(1791)十二月上送本閣燒火”란 기록이 부기되어 있고 道光八(1828)年度形止案에도 “以上謹依本閣啓下關”이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각이란 내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63) ‘閣上’이라 기록된 형지안은 道光八年形止案이다. 여기서 말하는 閣이란 정확하지 않다. 대체로 강도에 수장되었던 형지안은 병인양요시에 화를 입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奎章外閣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64) 李泰鎭, “외규장각 도서의 유래와 1866년 프랑스 해군에 의한 방화 약탈 직전의 소장 상태,” 奎章閣, 25(2002), p.54.

3.3. 文獻의 禁燬와 被奪

우리나라의 다른 보존도서관은 보존, 보호와 복원 기능을 다하였으나, 규장외각만은 보존과 보호의 기능은 하였으나 복원의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 반면 수장된 도서가 禁燬되고 掠奪되는 아픈 역사가 있다.

도서의 수복활동은 적극적인 도서의 보존활동이다. 금책은 逆說의으로 또다른 보존활동이니, 이는 소극적인 보존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금책되지 않은 다른 도서를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재난으로 서적이 산실되자 복본을 만들기 위해 복인한 바 있으니 사고의 실록이다. 그러나 규장외각에 수장되었던 서적은 2차례 재난을 당했다고 볼 수 있다. 한차례는 정조 15(1791)년 서학서를 불태웠을 때이고, 또 한차례는 고종 3(1866)년 프랑스군이 강화도 행궁에 침입하여 일부 서적은 약탈하고 행궁에 불질렀을 때이다.

병자호란을 당해 불모로 잡혀갔던 昭顯世子를 위시하여 연행사신으로 연경에 갔던 許筠, 金堉, 李頤命, 李承薰, 洪大容, 李德懋, 朴趾源, 徐浩修 등이 북경에서 서양인을 찾아보고 천주교 서적을 수증하거나, 書肆에서 구입하여 귀국하였다. 이렇게 속속 도입된 천주교서적은 신에유학자들이 열독하기도 하고, 성균관의 유생들은 몰래 돌려가면서 읽기도 하였다.

<표 5> 燒却된 外奎章閣의 西學書籍

著者 / 書名	冊數	著者 / 書名	冊數	著者 / 書名	冊數
Alphonsus Vagnoni(伊) 達道紀言	1	Alphonsus Vagnoni(伊) 修身西學	1	Adam Schall(獨) 眞福訓全總論	1
Augustus Tudeschini(伊) 渡海苦續記	1	Alphonsus Vagnoni(伊) 勵學古言	1	著者未詳 進呈書像	1
Alphonsus Vagnoni(伊) 童幼教育	2	Nicolaus Longobardi 靈魂道體說	1	Julius Aleni(伊) 滌罪正規	2
Gaspard Ferreira(葡) 玫瑰十五端	1	著者未詳 畏天愛人極論	1	Julius Aleni(伊) 天主降生言行紀略	2
Alphonsus Vagnoni(伊) 斐錄答彙	2	仁會 仁會約	1	Alphonsus Vagnoni(伊) 天主聖教四末論	4
Alphonsus Vagnoni(伊) 誓學	1	Jacobus Rho(伊) 齋克	1	著者未詳 清涼山志	4
Jacobus Rho(伊) 西洋統領公沙効忠紀	1	Alphonsus Vagnoni(伊) 齊家西學	5	Joannes Terrenz(瑞) 泰西人身說概	2
Jacobus Rho(伊) 聖記百言	1	Adam Schall(獨) 主教緣起總論	4	Alphonsus Vagnoni(伊) 寶字始末	2
孫學詩(中?) 聖水紀言	1	Adam Schall(獨) 主制群微小引	2	Lazarus Cattaneo(伊) 悔罪要指小引	1

그러나 정조 10(1786)년 대사헌 金履素가 燕貿冊子는 모두 不經한 서책이어서 허가받지 않은 서적의 貿來를 엄금할 것을 청했다. 이후 천주교 서적 및 稗官雜記의 도입을 금하였으므로 더 이상 국내로 이들 문헌을 도입하기는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조 15(1791)년 신

해사옥으로 천주교서적을 보는 것을 금하면서 서양서적을 가진 자는 관에 자수하게 하고,⁶⁵⁾ 弘文館에 수장되었던 西書도 모두 소각시켰다.⁶⁶⁾ 이어 규장외각의 서적도 12월에 불태웠다. 이때 소각된 서적은 冊庫에서 옮겨온 27종 48책이었는데 <표 5>와 같다.

이후 규장외각에 서적을 봉안하기도 하고 경중으로 가져가기도 하였으나 더 이상의 소각은 없었다. 그러나 외적의 침입을 받아 피해를 입었는데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된 것이다. 약탈된 후는 복원이나 복복을 제작한 바도 없었다. 이점이 사고와는 다른 점이다. 즉 고종 3(1866)년 프랑스 해군은 대원군 정권이 천주교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선교사 9명을 처형한 사건을 구실로 병인양요를 일으켰다. 강화도가 위급하게 되어 沁都留守가 長寧殿에 봉안해두었던 御眞을 白蓮社에 이봉할 것을 계하자 왕을 南殿으로 이봉할 것을 명하였다.⁶⁷⁾ 그러나 외각에 수장된 서적의 이봉에 관한 기사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만 외각의 서적은 모두 훼손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다.⁶⁸⁾ 따라서 규장외각의 서적은 국내에는 전래될 수 없는 것이다.

당시 서양측의 기록에 의하면 프랑스군은 10월에 7척의 군함과 1,400여명의 병력을 이끌고 강화도를 점령하였고, 강화부에 입성해서 19개의 은폐에서 은 887.5kg을 약탈해서 식민성장관에게 보내고, 또 서적 340책을 위시한 수장품 359점을 약탈해서 본국에 보낸 것⁶⁹⁾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약탈한 후 건물은 모두 불을 질렀으므로 프랑스군이 약탈한 340책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실되었다.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서적은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徽慶園⁷⁰⁾園所都監儀軌』 1책만 1993년 9월에 반환되어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다.

65) 正祖實錄 권33. 15년 11월 己卯. 책46. p.258上左.

66) 正祖實錄 권33. 15년 11월 癸未. 책46. p.262下右.

67) 本朝監事[1960], 권186. 高宗 3년 9월 8~9일. 장26b. (서울대 古 4254-16-113)

日省錄 影印本(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2), 高宗 3년 9월 8일. 책66. 高宗 3. p.429下左.

68) 金魯鎮, 江華府誌 寫本[光武 3(1899)], 권2. 장2a.

69) 李泰鎮, “외규장각 도서의 유래와 1866년 프랑스 해군에 의한 방화 약탈 직전의 소장 상태,” 奎章閣, 25(2002), p.49-64.

70) 정조의 후궁 綏嬪 朴氏의 묘로 사적 제360호이다. 綏嬪 朴氏는 영조 46(1770)년에 태어나 정조 11(1787)년 후궁 간택에 뽑혀 綏嬪에 봉해지고 가순궁(嘉順宮)이라는 궁호를 받았다. 정조와의 사이에 순조와 숙선옹주(淑善翁主)를 두었고, 순조 22(1822)년 사망 하였다. 이에 현목(顯穆)이라는 시호를 올리고 묘호(廟號)를 ‘徽慶’이라 정한 뒤, 당시 경기도 양주군 배봉산 아래에 묘역을 정하고, 1823년 2월 27일 장례식을 거행하였다. 그 뒤 철종 6(1855)년 순조와 비 순원왕후의 인릉(仁陵)의 천장지(遷葬地)를 구하면서 휘경원도 천장하기로 하여, 이 해 10월 6일 수빈 박씨의 묘소를 선조의 후궁 인빈 김씨의 묘인 양주 순강원(順康園) 우강(右岡)으로 옮겼다. 그러나 철종 14(1863)년 풍수지리상 부적당하다고 해 다시 양주의 달마동(達摩洞)으로 이장하였다. 이어 또다시 1949년 7월 6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삼릉(西三陵) 경내로 이장하였다.

結 言

근래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는 보존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어서 그 필요성, 기능, 조직, 자료폐기실태, 공동보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고려시대 이래로 보존도서관이 있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 조선시대의 보존도서관이었던 奎章外閣의 보존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고찰하였다.

규장외각은 강화도에 설치된 奎章閣의 서고이다. 강화도는 고려시대부터 군사적 요새로 중시되었고, 조선시대에도 역시 중시되었다. 더구나 임진왜란 이후는 전란에 대비하여 역대로 중요전적을 수장하였다. 선조 39(1606)년에 史庫를 설치한 바 있고, 또한 효종년간에는 마니산사고 옆에 別庫를 건립하여 어제, 어필과 고급의 전적을 수장한 바 있으며, 영조년간에는 籍庫를 두고 영조 潛邸時의 御籍을 수장하였다. 정조년간에 이르러 장서는 많으나 장소는 협착하고, 감수도 없어 허술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비할 필요를 느꼈다. 드디어 정조 6(1782)년에 行宮의 동쪽, 長寧殿의 서쪽에 도합 20간의 규장외각을 건립하고 이들 서적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규장각 본래의 주목적이 어제, 어필과 모훈을 봉안하는 것이었는데, 이들 문적의 진본은 일상으로 열독하는 장서가 아니므로 오로지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 더구나 규장외각은 왕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 그 목적은 문헌의 奉安, 曝曬와 奉審이 주요한 기능인 보존도서관이었다. 보존도서관은 도서를 영구히 전승하기 위해 대개 보존, 보호, 복원의 여러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규장외각은 보존과 보호기능이 더욱 중시되었다.

규장각에서는 규장외각에 수장된 문헌의 보존을 위해 문헌을 봉안하고, 규장외각 건물을 봉심하고, 수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외각의 관리는 江華留守의 책임 하에 江華府와 行宮守直軍官, 書吏 등이 주관하였고 그 경비는 강화부에서 부담하였다. 정조 6년 4월부터 문헌을 봉안한 후의 제반행사는 봉심, 수호, 점검 등이었다. 문헌을 봉안할 때는 內閣의 閣臣을 파견하였고, 봉심도 규장각의 각신을 파견하였는데 긴급할 때는 江華留守의 책임 하에 수행하였다.

문헌이 毀損, 損傷, 腐蝕되지 않게 하는 보호활동을 위한 조치에 관해서는 서적의 봉심, 포쇄, 점검기능이란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봉심은 춘추로 2회 행하였으며, 포쇄와 점검은 1년의 간격을 두고 행하였다. 점검결과를 중앙에 보고하고 문헌의 수장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形止案은 3건을 작성하여 本閣, 外閣, 西序에 봉안하였는데, 史閣에서는 2건을 작성하여 본관과 당해 외사고에 수장한 예와는 상이하다.

규장외각은 조선 후기 보존도서관의 하나로서 四外史庫와 함께 雙璧이 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參考文獻

- 강미희. 국내 도서관의 자료보존 및 폐기실태와 공동보존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全南大 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2003.
- 江華府. 江華府宮殿考. 寫本. [高宗 18(1881)]
- 高麗史. 影印本.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72.
- 奎章閣志. 丁酉字本. [內閣, 正祖 8(1784)] 2卷1冊.
- 奎章閣.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誌狀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 寫本. [正祖 6(1782)]
- 奎章閣. 內閣日曆. 寫本. [正祖-高宗]
- 김문식 등.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외규장각 의궤 조사연구. 서울 : 외교통상부, 2003.
- 방준필. “자료보존과 매체변환.” 자료보존과정(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2)
- 裴賢淑. “江都外奎章閣考.” 圖書館學論集, 제6집(1979), pp.53-103.
- 裴賢淑. “高麗朝의 寺刹文庫에 대하여.” 奎章閣, 제6집(1982.12), pp.45-61.
- 裴賢淑. 朝鮮實錄研究序說. 大邱 : 태일사, 2002.
- 薛錫圭. “奎章閣 研究.” 大丘史學, 제29/31집(1986), pp.117-144, 73-108.
- 新增東國輿地勝覽. 影印本. 서울 : 東國文化社, 4291.
- 李泰鎭. “외규장각 도서의 유래와 1866년 프랑스 해군에 의한 방화 약탈 직전의 소장 상태.” 奎章閣, 제25집(2002), pp.49-64.
- 조옥수. 공동보존도서관 설립 참조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지역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3.
- 增補文獻備考. 影印本. 서울 : 東國文化社, 4292. 권221. 職官考.
- 한상완. 도서관 자료보존 환경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1.
- Banks, Paul N. “Preservation of Library Material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23. N.Y. : Marcel Dekker, 1978. pp.180-222.
- Michèle Valerie Cloonan. “자료의 보존.” 方俊弼역. 도서관, 제49권, 제3호(1994. 가을), pp.85-92.